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형재 의원(찬성자 : 46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838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5. 30.

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2. 제안이유

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관련 상위법인 「물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조항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서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으로 수정함.

(안 제23조제3항제2호, 안 별표 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이하 “조례”)」 제 23조제3항제2호 및 별표 3에서 「물환경보전법(이하 “법”)」 제 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,
 - ‘21.4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2조제8항이 제32조제9항¹⁾으로 항 번호가 개정²⁾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 번호를 반영하려는 것으로,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- 참고로,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 실적은 전무함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23조제3항제2호, 안 별표 3)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사용료) ①~② (생략)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 <u>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</u> ----- 3. (생략) ④ (생략)	제23조(사용료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 <u>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1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(배출허용기준) ① - ⑧ (생략)

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2) 법률 제18030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

현행	개정안
<p><별표 3>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□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<u>제32조제8항의</u>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 · 생물학적산소요구량(BOD)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부유물질농도(SS), 총질소(T-N), 총인(T-P)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 · 폐수배출량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. 	<p><별표 3>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□ 사용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----- ----- -----<u>제32조제9항의</u>----- -----. 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